

# 정 관

제정 2022. 10. 27.

개정 2024. 2. 23.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순환물류용기재활용공제조합” (이하 “조합” 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영문으로는 “Korea Circulation Logistics Articles Recycling Cooperative” (약칭 “KCLARC”)로 표기한다.

**제2조(설립근거)** 조합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하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재활용 사업공제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목적)** 조합은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제16조에 따른 제품 및 포장재 제조·수입·판매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 라 한다)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하고, 파렛트·플라스틱 운반상자(컨테이너) 제품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환경보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소재지 등)** ①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조합의 활동범위는 전국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광고)** 조합의 광고는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한다.

**제5조의2(경영공시)** ① 조합의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사업결과보고서, 제3호의 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 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의 서식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2. 23.]

## 제2장 사 업

**제6조(사업)** 조합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파렛트·플라스틱 운반상자(컨테이너) 제품의 회수·재활용의무 대행 및 이에 따른 분담금 징수
2. 재활용의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파렛트·플라스틱 운반상자(컨테이너) 제품의 재활용·재사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파렛트·플라스틱 운반상자(컨테이너) 제품의 제주·수입 및 회수·재활용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통계조사
5.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회수·재활용 의무이행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7.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관련 조사·연구 및 자원, 재활용 촉진 관련 기반 구축 등의 사업
8. 파렛트·플라스틱 운반상자(컨테이너) 제품의 효율적인 회수·재활용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9.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환경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11. 재활용가능자원의 국내·외 시장 환경의 악화 또는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
12. 기타 조합의 발전과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회원사간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전문개정 2024. 2. 23.]

- 제7조(공제사업 등)** ① 조합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의무량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받아 회수·재활용 공제사업을 수행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의 회수·재활용 공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공제사업에 대한 참여 및 분담금 납부 등을 내용으로 한 참여약정서를 제출받아 회수·재활용 공제사업을 수행한다.
- ③ 조합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조사방식으로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따라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4. 2. 23.>
- ④ 조합은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의 재활용의무량 달성을 위하여 회수·재활용을 위탁할 수 있으며,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적법한 회수·재활용실적에 대하여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한다.
- ⑤ 회수·재활용 공제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회수·재활용 공제사업운영규정(이하 “공제사업운영규정”이라고 한다)」으로 정한다.
- ⑥ 회수·재활용 공제사업과 관련한 분담금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8장 분담금 등에서 정한다.

## 제3장 사 원

- 제8조(사원의 자격)** ① 조합의 사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른 공제회원 및 동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공제조합의 회수·재활용사업자와 조합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조합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로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임원급 간부를 사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공제회원의 사원 수는 공제회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활용사업자의 사원 수는 공제회원의 사원 수 이내로 한다.
- ③ 조합의 임원은 당연직 사원으로 하며, 조합의 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요한다.
- ④ 총회는 제3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 사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승인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원은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사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⑤ 조합의 사원은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사원의 권리)** ① 사원은 조합의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사원의 지위와 권리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0조(사원의 의무)** ① 사원은 법령에 의한 처분, 조합의 정관 및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조합은 사업추진 및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의 설립목적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③ 사원은 제12조에 따른 신고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조합에 알려야 한다.

**제11조(자격 상실에 따른 권리 및 의무)** 사원이 제8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사원으로서의 본 조합에 대한 제9조의 권리를 상실하고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면한다.

**제12조(신고)** 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해당 내용을 조합에 신고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경우
3. 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기타 조합의 필요에 의하여 신고를 요구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당해 사원에게 있다.

**제13조(규정의 준용)** 기타 사원에 관한 사항은 제17조 내지 제18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회 원

**제14조(회원의 종류 및 가입자격)** ① 조합의 회원은 공제회원, 개별이행회원, 일반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회원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라 파렛트·플라스틱 운반상자(컨테이너) 관련 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한다.
  2. 개별이행회원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기 위하여 동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일반회원은 파렛트·플라스틱 운반상자(컨테이너) 관련 제품 회수·재활용사업자로 한다.
  4. 준회원은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참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③ 제2항의 각 호의 자가 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신청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사업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회원의 지위와 권리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1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법령에 의한 처분, 조합의 정관·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공제회원, 개별이행회원은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출고·수입실적 등 분담금 산출에 필요한 서류를 법에서 정한 기관에 제출한 후 지체없이 그와 동일한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일반회원은 조합으로부터 부여받은 회수·재활용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회수·재활용 활성화와 순환자원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조합의 설립목적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제17조(탈퇴)** ① 회원이 본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을 경우
  2.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폐업한 경우

- 5. 제40조에 따른 분담금 또는 가산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6. 조합과의 연락두절 등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때
- ③ 회원이 제17조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18조에 의해 제명된 경우, 제15조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고,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면한다.

**제18조(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 1. 조합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2.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 3.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조합의 목적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② 이사장은 회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전 해당 회원에게 서면 등으로 이에 대한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신고)**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경우
-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경우
- 3.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4. 기타 조합의 필요에 의하여 신고를 요구한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다.

**제20조(회비 등)** ① 조합은 사원 또는 회원으로부터 가입비(입회비)·회비,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비용 징수와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제5장 임원 및 직원

[장제목개정 2024. 2. 23.]

**제21조(임원의 구성)** ① 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2인 이하의 이사와 2인 이하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장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③ 상근임원은 1인으로 하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에서 1인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 ④ 조합의 임원은 3인 이상의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으로 선임하며, 상근임원과 비상근임원으로 구분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선임 등)** ①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장은 이사 중 호선한다.

② 상근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조합은 임원 선임과 교체 시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5.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 재활용업체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에 해당되는 자(비상근 제외)
- 7. 현재 재직중인 임원의 특수관계인(친계 8촌, 모계 4촌 이내)

⑤ 제4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3조(임원의 해임)**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 1. 관련법령, 정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2. 조합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
- 3.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4.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으로 조합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켰을 때
- 5.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때

**제24조(임원의 직무 및 대표권 제한)** ① 이사장은 본 조합의 대표권을 가지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단, 이사장의 유고 또는 결위 시에는 상근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상근임원이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상근임원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집행·관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3.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회의록에 회의결과에 대한 기명날인하는 일

4.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환경부장관,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시 총회 및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25조(임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의 임원은 상근임원을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상근임원의 퇴직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2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2개월 이내에 임원을 선임해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27조(직원 및 직제 등)** ①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직제와 직원 수, 보수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 2. 23.]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조합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의 모든 임직원(비상근은 제외한다)은 조합과 계약된 재활용사업자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그 사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 또는 보수를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이사장이 재활용업체 대표일 경우 재활용사업자의 위수탁 물량배분 및 신규업체 진출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4. 2. 23.]

## 제6장 사 원 총 회

**제29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의결이 있을 때
3. 사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할 때
4.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총회는 사원으로 구성한다.

**제30조(총회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의 소집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이사장의 사고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제2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1조(총회 의결사항)**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제·개정 및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단, 상근임원은 제외)
3. 사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로써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총회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재적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산 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사원이 행사한다. 다만,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원은 대리인의 출석 또는 서면의견 제출로써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 출석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총회 참여제한)** ① 의장 또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사원과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임시의장을 호선한다.

**제34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 임원 2인이 기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1. 개최일자 및 장소
2. 출석자의 수
3. 의사경과와 결과

## 제7장 이 사 회

**제35조(이사회의 구성)** 조합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로써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청한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사항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이사 전원이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고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사원 및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상근임원의 선임·해임 및 연임에 관한 사항
6. 대여 및 차입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가산금 등의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9. 결원이 생긴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10. 사원 권리 정지 및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11. 제4조 제2항에 따른 지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조합 운영상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45조의 위원회에 의결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그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이사회 의결로 간주한다.

**제38조(이사회 의결방법)** ① 이사회 의결은 의결권이 있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이사회 의결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③ 이사회 출석과 의결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3.>

1. 대면방식 : 출석이사 전부가 제29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소집장소에 집합하는 방식
2. 비대면방식 : 출석이사 전부가 영상 등으로 집합하는 방식
3. 혼합방식 : 출석이사 일부는 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출석이사 나머지 일부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집합하는 방식

**제39조(참여제한)**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본인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본인과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40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 임원 2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1. 개최일자 및 장소
2. 출석자의 수
3. 의사경과와 결과

**제41조(연구원 등의 설치)** ① 조합은 회수·재활용 의무 대행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조합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8장 분담금 등

**제42조(분담금 등)** ① 조합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인 공제회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한다.

② 공제회원별 분담금은 제45조에 따른 공제사업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분담금과 관련된 회계는 제품별로 관리하며, 세부사항은 「공제사업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공제회원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분담금의 납부절차 및 가산금 요율 등 가산금 징수에 관해서는 「공제사업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분담금의 양도·양수)** 분담금은 양도·양수하거나 공제회원의 채무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4조(재활용부과금 등의 승계)** ① 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하여 공제회원의 재활용의무량을 미달한 때에는 각 공제회원이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재활용부과금은 공제회원의 재활용의무량 점유율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제45조(공제사업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합은 회수·재활용 공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파렛트·플라스틱 운반상자(컨테이너) 관련 제품 순환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등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제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의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분담금의 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 회수·재활용 지원금의 단가 결정,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또는 협의할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분담금의 단가 결정과 회수·재활용 지원금의 단가 결정에 관한 공제사업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③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공제사업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품목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실무위원회는 분담금 및 지원금, 운영비 등에 대해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제사업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공제사업운영위원회가 내린 결정 또는 운영이 법령 또는 공익에 반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조합 및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6조(고문 등)** ① 조합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고문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고문이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 시 별도 규정에 따라 소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47조(수입)** 조합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재활용분담금
2. 기부금 또는 보조금
3.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4. 사업에 수반된 수입

- 5. 가입비(입회비) 및 회비
- 6. 기타 수익금

**제48조(수익사업)** ① 조합은 제6조에서 정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수익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은 그 사업의 종류별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수익사업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없다.

**제49조(재산의 구분과 관리)** ① 조합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③ 조합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50조(회계의 구분)** ① 조합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편성·운용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51조(회계원칙)** 조합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52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3조(세계잉여금)** 조합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적립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4조(사업계획 등)** ①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은 내 사업연도 경과 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2. 23.>

④ 조합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3.>

[전문개정 2024. 2. 23.]

## 제10장 해산

**제55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에서의 해산 결의
2. 조합의 파산
3. 기타 해산사유 발생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청산인)** 조합의 해산 시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임원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57조(잔여자산의 처분)** 조합 해산 시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자산이 있을 때에는 국가로 귀속한다.

## 제11장 보 칙

**제58조(표창)**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조합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9조(규정의 제정 등)** 이사장은 조합의 운영 및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거나 이미 제정된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2. 23.]

[제목개정 2024. 2. 23.]

**제60조(경미한 사항)**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령 개정 등 상위 규정 개정 등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
2. 각종 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양식의 제·개정
3. 각종 규정 중 내용의 변경이 없는 문구의 수정
4. 각종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1조(준용)** 본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부칙 <2022. 10. 27.>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기한 날(2022. 12.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조합의 설립 등을 위하여 창립 총회를 거쳐 이루어지는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자발적협약 업무의 승계)** 조합은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에서 운영 중인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발적협약 업무를 승계한다.

**제4조(설립 당시 사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조합의 설립 당시 발기인은 본 정관에 따라 사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발기인 명단은 별지 2와 같다.

② 조합의 설립 당시 창립 총회에서 선임된 사원 및 임원은 본 정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사원 및 임원 명단은 별지 3과 같다.

#### 부칙 <2024. 2. 23.>

본 개정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24. 3. 14.)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기본재산의 목록 및 평가액

(단위 : 원)

순번	명 칭	종 류	평 가 액	비 고
1	사무실 임대보증금	채 권	12,300,000	135㎡(41평)

[별지 2]

발기인 명단

순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주소		
1	서병륜 (徐炳倫)	1949.09.03	02-3669-70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삼개로 60, 103동 304호		
2	최병민 (崔秉旻)	1960.08.08	010-3274-612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한숲로 83, 509동 1702호		
3	김진국 (金鎭國)	1963.05.05	010-4339-596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6-19, 102동 1903호		
4	양석홍 (楊碩洪)	1958.10.10	053-857-9200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16길 26		
5	임동욱 (林東郁)	1972.10.23	010-8759-617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143, 125동 1201호		
6	김덕열 (金德烈)	1960.03.17	02-715-1281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45길 21-26, 302호		